



제318회 임시회

2013. 3. 6.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충청북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2월 25일

○ 회부일자 : 2013년 2월 26일

3. 제안이유

○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 상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를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함(안 제5조)

나.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불허 및 위원의
기피 의결 기준 추가(안 제10조제3항)

다.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의 정화위원회 참관 신청방법 추가
(안 제10조제4항)

라. 학교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되었을 경우 재 심의
기준 추가(안 제10조제5항)

마. 정화위원회 심의결과 통보방법 추가(안 제10조제6항)

바. 그 밖에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직접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8. 13. 「학교보건법 시행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개정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동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 정비 내용은
 - 안 제5조에 정화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 안 제10조제3항에 정화위원회 회의 참관 불허와 위원의 기피 의결 기준을, 안 제10조제4항에는 참관 신청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10조제5항에는 학교의 장 의견과 다르게 정화위원회에서 심의 되었을 경우 재심의 기준을, 안 제10조제6항에서는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그 밖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발 취

□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2.11.14] [대통령령 제24026호, 2012. 8.13. 일부개정]

제7조(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의 소속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화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정화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은 정화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은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소속 직원, 관련기관의 공무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문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⑥ 정화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의 장을 정화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2.8.13>

⑧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정화위원회의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화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참관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8.13>

⑨ 학교의 장은 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를 요청받은 정화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8.13>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8.13>

[제목개정 2012.8.13]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관련 전

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총선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2.8.13>],

[시행일 : 2012.11.14] 제7조의2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화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화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화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2에서 이동, 총선 제7조의3은 제7조의4로 이동 <2012.8.13>]

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사람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1의2. 정화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의2. 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가 해당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7.4], [제7조의3에서 이동 <2012.8.13>]